



주요심결사례

2003. 1. 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코리아나화장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2002단체1697)	(주)코리아나화장품은 「시판사업팀 2001년 영업정책」 ('00. 12. 26), 「2002년 시판사업팀 특약점 부문 영업정책」 ('01. 12. 26) 등의 주요영업전략 문서 등을 통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제품별로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동 소비자 판매가격의 70%를 대리점의 전문점 판매가격으로 정하여, 동 판매가격을 자신의 각 영업지점에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통보하고, 각 대리점에게는 교육을 하거나 영업사원이 방문하여 통보하였으며, 전문점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영업사원 등이 전문점의 판매가격을 수시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2002. 5월경에는 코리아나 전문점 제값받기 운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화장품 전문조사기관인 (주)에이씨닐슨 코리아에 의뢰, 2001. 3월경 전문점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판매가격준수 실적이 좋은 전문점을 관리하는 영업사원에 대해 성과급 지급시 반영하는 등 자신이 정한 일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위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화장품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한국화장품(주)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2002단체1698)	한국화장품(주)은 「시판부문 중기 사업계획」 ('02. 2. 20) 문서 등에 시판부문의 주요사업 전략의 하나로 “가격안정화정책”을 수립하였고, 신상품 출시 때마다 유통단계 별 출하율을 정하여 대리점, 전문점에 영업사원 등을 통해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2002. 5월말경 「2002년 6월 시판영업전략」 문서를 각 지역영업팀에 통보하면서 A3F[ON] 가격안정화정책으로 할인판매 및 비정도영업 전문점 적발시 제품출하 중지 및 영업담당, 특약점장, 전문점주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2001. 9. 13. “울산남구” 대리점 개설시 울산남구, 울주군을 영업구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화장품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역으로 정하여 대리점 개설을 승인하고, 2001. 11월경 “울산남구” 대리점과 거래하는 “일류” 전문점이 영업구역을 벗어나 포항지역의 “퀸유통”으로 A3F(ON) 제품을 거래하여 “퀸유통”이 30%로 할인판매하고 있다는 이유로, 울산남구 대리점에게 2001. 11. 22부터 2002. 1. 31 까지 “일류” 전문점에 A3F(ON) 제품 공급을 중지하게 하였으며, 2002. 1. 30. “울산남구” 대리점과 “일류” 전문점의 재거래를 승인하면서 대리점장 및 전문점주로부터 영업지역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등 특정구역 내에서만 상품을 판매토록 하여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p>	
(주)금비, (주)금비화장품, (주)금비인터넷내셔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2002단체1707)	<p>(주)금비는 체인점의 소비자가 준수를 위하여 미용사원(Beauty counselor)에게 제품주문서의 가격표(제품주문서)를 배포하였으며, 미용사원들은 업무계획서 일정대로 각 체인점에 상주 및 순회하면서 체인점의 소비자가 준수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의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2항에 “체인점은 본 계약서에서 결정한 가네보화장품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소매판매만을 해야하며”라는 조항과 제3조(거래조건) 2항에 “체인점은 전매, 난매 등 상호이익을 해치는 무질서한 판매는 하지 않으며 행위발생시 본사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설정하여 체인점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주)금비화장품은 2001. 9. 1부터 2002. 7. 31까지 체인점(471개)과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가네보코스메트체인점계약서」 제5조(거래조건) 2항에 “체인점은 전매, 난매 등 상호이익을 해치는 무질서한 판매는 하지 않으며 행위발생시 본사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설정하여 거래하였고, 상기의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2항에 “체인점은 최적의 진열방법으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소매판매만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라는 조항과, 제5조(거래조건) 2항에 “체인점은 전매, 난매 등 상호이익을 해치는 무질서한 판매는 하지 않으며 행위발생시 본사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설정하여 체인점과 거래하였으며, (주)금비인</p>	<p>▶ (주)금비는 「가네보체인점계약서」 제1조제2항,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5항, (주)금비화장품은 「가네보코스메트체인점계약서」 제1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5항, (주)금비인터넷내셔널은 「부쉐롱체인점계약서」 제1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5항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본 약관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지속중인 고객들에게 통지하는 한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화장품 체인점에 통보토록 함</p>



주요 심결 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터내셔널은 2002. 6. 1부터 2002. 7. 31까지 체인점(23개)과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부쉐롱체인점계약서」 제5조(거래조건) 2항에 “체인점은 전매, 난매 등 상호이익을 해치는 무질서한 판매는 하지 않으며 행위발생시 본사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설정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의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2항에 “체인점은 최적의 진열방법으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소매판매만을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라는 조항과, 제5조(거래조건) 2항에 “체인점은 전매, 난매 등 상호이익을 해치는 무질서한 판매는 하지 않으며 행위발생시 본사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설정하여 체인점과 거래하는 등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계약서에 재판매가격에 대한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9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였고, (주)금비는 「가네보체인점계약서」 제11조제1항, 제11조제5항, (주)금비화장품은 「가네보코스메트체인점계약서」 제11조제1항, 제11조제5항, (주)금비인터넷내셔널은 「부쉐롱체인점계약서」 제11조제1항, 제11조제5항 등과 같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약관법 제9조제2호 및 제11조제2호 위반</p>	

2003. 1. 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동양전자(주), (주)현대오토넷, (주)대동오토사운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2002광고1805, 2002광고1806, 2002광고1803)	<p>동양전자(주)는 2001년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RTV ASL-6100, ASL-6220, ASL-7200에 대하여, (주)현대오토넷은 2002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중고액정이 사용된 CAR TV HLT-7000W, HLT-7000DW에 대하여, (주)대동오토사운드는 1999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기간 중 중고액정이 사용된 CAR TV XT-TV5600N, XT-TV6600N, XT-TV7000N, XT-TV7700W, XT-M6000, LTV-6000,</p>	<p>▶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LTV-6100, LTV-6700, LTV-7000, LTV-7700W, LMT-S7000N에 대하여 포장용기, 팝플렛, 잡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광고하면서 동 제품들에 중 고액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정 품액정이 사용된 제품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가 있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제2호 위반	

2003. 1. 1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4개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2002단체3198)	(주)롯데리아, (주)신맥, (주)맥킴, (주)두산은 환경부의 '패스트푸드업계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 대한 업계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 4월말부터 9월 말까지 수 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탄산음료 리필서비스 중단에 관하여도 논의를 하다가, 2002. 7. 25. 롯데리아 대 회의실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롯데리아, 신맥, 케이에프 씨, 베거킹 관련담당자들은 2002. 8월중에 탄산음료 리 필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포스터를 제작하고 9 월 한달간의 안내를 거쳐 10. 1부터 전면중단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상기의 합의에 따라 탄산음료 리필서비스 중단에 관한 안내포스터 제작 및 안내기간을 거쳐 2002. 10. 1부터 리필서비스 중단을 실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상품의 거래조건은 개별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료로 제공하던 탄산음료 리필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들의 상기의 행위는 거래조건 차별화를 배제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초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2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3. 1. 1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일산지역 13개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 미래디지털 및 미래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한 건(2002하일1811)	<p>일산지역 13개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인 강촌마을동우회, 대화회, 대화2지구친목회, 백마친목회, 백송친목회, 본일회, 주엽상조회, 정발산중우회, 중산친목회, 탄현1지구친목회, 탄현2지구친목회, 호수친목회, 후곡친목회 및 일산지역부동산중개업친목연합회는 2001년 8월경부터는 강운중(미래디지털 대표), 2002년 7월부터는 기훈철(미래 대표)로 하여금 자신의 회원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시키지 못하도록하거나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가입시키도록 하였고, 강촌마을동우회 회장 박중선 등 회원 5~6명은 2002년 4월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강촌마을에 신규개업한 강촌 114부동산(대표 유한상) 사무실에 찾아가 비회원업소와는 거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전단(회원서명)을 배포하면서 비회원업소를 추방하자는 회원들의 의지가 확고하니 영업장소를 이전하라고 하였으며, 탄현2지구친목회는 중개수수료 인하행위, 일요일에 영업하는 행위, 비회원들과 거래하는 행위, 사무실의 범위를 벗어난 선전광고판 설치 등을 금지하는 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규정한 회칙을 운영하였고, 미래디지털 대표 강운중은 2001년 8월~2002년 6월 기간 일산지역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의 회원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신청을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거래정보망을 제공하였으며, 미래대표 기훈철은 2002년 7월부터 일산지역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의 회원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3~6개월의 시차를 두어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1호,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 위반</p>	<p>▶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연명으로 부동산관련 전문지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1. 1. 27.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비씨카드(주)의 구속조건 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2유거1572)	비씨카드(주)는 비씨카드 업무협정 제26조(결제계좌)제2항에서 결제계좌의 예금종목을 각 회원은행이 정하도록 하였고, 비씨카드가맹점약관 제8조(예금계좌의 개설)에서 가맹점은 비씨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회원은행에 지정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회원은행들은 자신의 은행예금계좌만을 가맹점의 결제계좌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회원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한 가맹점만을 자신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비회원 금융기관의 계좌를 결제계좌로 신청한 가맹점을 대하여는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인 신용카드가맹점의 자유로운 결제계좌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결제계좌 유치를 희망하는 비회원금융기관의 결제계좌유치시장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토록 함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 FAX (02)775-8873